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한국 수입 상품의 원산지검증 불복사례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ppeal Case of Origin Verification for Korean Import Goods Using Bootstrapping Technique

김 종 혁* Jong-Hyuk Kim

허 상 현** Sang-Hyun Heo

김 석 철*** Suk-Chul Kim

· 목 차 ·

I. 서 론

II. 원산지검증과 FTA 특혜관세

III. 원산지 불복사례 실증 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겸임교수, 제1저자

** 관세법인 아미 공동대표관세사 및 박사, 제2저자

***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교신저자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요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부트스트랩, 원산지검증, FTA,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I. 서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1962년부터 수출 진흥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세계 7위권의 수출입 국가로 발전하였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자국 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는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WTO를 중심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로 세계무역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은 2017년 기준 15개 협정으로 미국과 EU, 중국을 포함한 선진경제 52개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FTA 협정체결국가와의 수출입실적은 한국 전체 수출입실적의 68% 수준으로 전체 교역의 3분의 2가 넘는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적용은 FTA 역외국에 대한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이어져 수출입 규모가 증가된다. 이러한 FTA활용을 위해서는 교역대상 상품의 원산지 충족이 전제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 원산지 적격여부를 관세당국에서 판단하는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임다희, 김은미, 2016). 원산지검증제도가 없으면 원산지 허위신청의 남발로 FTA 협정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원산지제도는 협정마다 차이가 있으며 원산지검증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비관세장벽이 될 수도 있다. 각기 다른 원산지기준과 검증제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무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박홍규, 2014). 따라서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연구는 복잡한 원산지검증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이어져 한국과 세계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청구, 불복, 이의신청, 재심사 등 관세청 및 조세심판원 사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원산지검증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산지 관리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즉, 본 논문의 주제인 원산지검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산지검증의 목적 등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한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원산지 소송과 관련한 실적을 분석하였다. 원산지검증관련 사례 연구를 위하여 과세전적 부심사청구,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경정, 취소·인용, 기각된 사례도 분석을 통하여 사례별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사례를 대상으로 중요 현안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실증분석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차례를 다음과 같다. 제 1장의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원산지규정과 원산지검증의 개요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의 FTA 협정체결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FTA 협정체결 국가와의 국가별, 업종별, 주요 품목별 수출입실적, FTA 특혜관세적용 수입실적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그리고 국제 원산지 수출입검증과 FTA 협정별 추정실적을 분석 파악하였다. 제 3장에서는 원산지검증 사례 연구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경정사례, 과세처분의 취소·인용 사례, 기각사례를 협정별로 발췌하여 분석한 후 사례별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안하며, 관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접수·처리된 검증사건에 대하여 주요 쟁점별로 가설 설정 및 검정을 위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함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II. 원산지검증과 FTA 특혜관세

1. 원산지검증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또한 약칭으로 'FTA 특혜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국가나 경제공동체 등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하나의 국가나 EU와 같은 경제단체, 캄이나 사이판 등과 같이 국경선 밖에 있는 보호령, 홍콩 등과 같이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 스코틀랜드와 같이 국제상거래 관행상 지역명이 원산지로 인정되는 지역 등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이지수, 2015).

원산지검증은 협의의 의미로는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인 원산지 결

정기준이나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하며 (황남재, 정재완, 2015), 광의의 의미로는 원산지 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요건인 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또는 허위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관세청, 2017). 특혜를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업자, 수출업자, 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과 계약상대국의 수출업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한다.

원산지검증의 목적은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제3국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에 목적이 있다(김창봉, 현화정, 2016). 수입자가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만으로 원산지의 정확성을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산지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와 원재료의 가치, 제조공정도 및 생산시설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통상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수입자를 통한 확인이 곤란하며, 현지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를 통한 최종적인 실사를 실시해야만 정확하게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가 있다(김한성, 조미진, 정재완, 김민성, 2008). 다른 목적으로 탈루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와 협정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상대국가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협정 이행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김창봉, 박원수, 2015).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대상자는 1차적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출국의 수출업자이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핵심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수출업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에는 생산자가 주된 검증대상이 된다. 원재료의 공급자 국가가 수출자나 생산자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까지 해야 하므로 원재료 공급자까지 검증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의 발급 담당자도 세관의 검증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의 거래, 유통, 운송, 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도 검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정재완, 2015). 원산지검증대상자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1단계는 수입자이며 2단계는 수출업자, 생산자, 재료 공급자로 이어지며 3단계에서는 운송업자, 창고업자, 관세사, 수출입 대행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해당된다(박홍규, 2014).

2. FTA 및 원산지증명에 따른 실적

1) FTA 특혜관세에 따른 수입실적

FTA 체결협정별 협정관세를 적용한 연도별 수입실적은 2012년 총수입에서 FTA 특혜수입은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41.3%, 2014년 37.4%, 2015년 42.3%, 2016년 37.4%로 FTA 적용 협정관세 적용 수입도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칠레 FTA 수입 활용이 2016년 기준 58.1%로 가장 높고, 한-콜롬비아 FTA 수입 활용이 12.2%로 가장 낮다.

〈표 1〉 FTA별 특혜관세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수입	특혜 수입	비율	총수입	특혜 수입	비율	총수입	특혜 수입	비율
칠레	4,812	2,297	47.7	4,412	2,260	51.2	3,704	2,154	58.1
EFTA	5,639	1,966	34.9	5,122	1,938	37.8	4,044	1,974	48.8
ASEAN	53,429	19,928	37.3	45,037	17,556	39	44,319	16,659	37.5
인도	5,275	1,817	34.4	4,240	2,112	49.8	4,189	2,181	52.0
EU	62,341	31,604	50.7	57,178	31,333	54.8	51,902	30,030	57.8
페루	1,434	223	15.5	1,146	228	19.9	1,294	262	20.2
미국	45,275	16,220	35.8	44,029	16,874	38.3	43,215	16,987	39.3
터키	655	272	41.5	789	285	36.1	742	276	37.1
호주				16,451	3,768	22.9	15,175	5,223	34.4
캐나다				3,985	868	21.8	3,942	1,232	31.2
중국							86,980	20,267	23.3
뉴질랜드							1,098	551	50.1
콜롬비아							432	53	12.2
합계	199,301	74,449	37.4	182,390	77,220	42.3	261,036	97,849	37.4

출처 : 관세청, 2017

2)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건수와 금액을 <표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2010년 48,061건에 50.7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67,037건에 127.6억 달러로 2015년에는 금액 면에서는 다소 감소하기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건수와 금액에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역이 많은 2012.3. 한-미 FTA 다음 해인 2013년에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기관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단위 : 건,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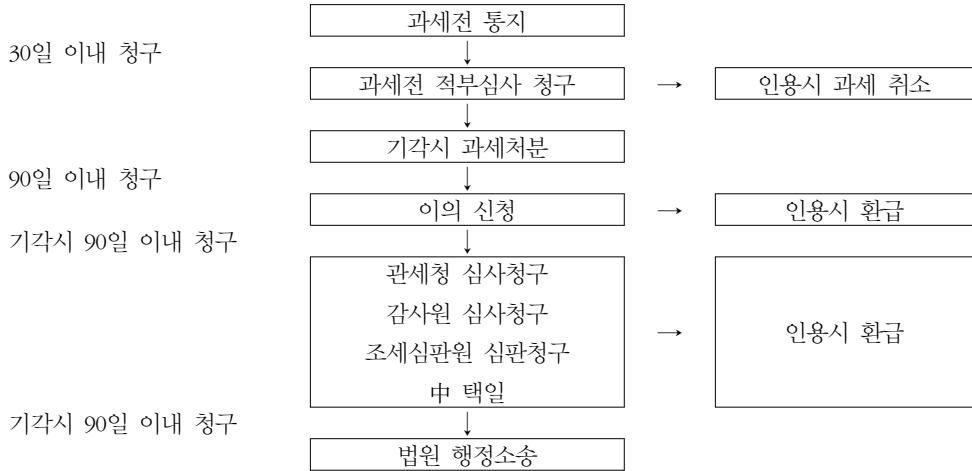
연 도	세 관		상공회의소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0	7,320	4.1	40,691	46.6	48,061	50.7
2011	12,459	8.0	54,581	96.1	66,976	104.1
2012	16,140	8.1	78,828	106	94,968	114.1
2013	22,549	15.1	100,791	122.8	123,340	137.9
2014	30,710	15.0	108,835	123.5	139,545	138.5
2015	37,477	21.2	129,590	106.4	167,037	127.6

출처 : 관세청, 2017

3. 한국의 관세불복 청구 절차

관세법에서 불복청구제도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세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자는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세관장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시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관세청에서는 심사청구와 별도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제도”를 두어 세관의 추징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부당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도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제도의 최종심이 되므로 감사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경우 아래 〈표 3〉과 같은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표 3〉 한국의 관세불복 청구 절차도



Ⅲ. 원산지 불복사례 실증 분석

1. 실증 분석을 위한 데이터 현황 및 전처리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세청 심사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에 대하여 정량적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관세청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최신결정사례에서 2009년부터 2016년 말까지 총 97건을 조사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된 후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라도 관세청이나 감사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2001년부터 2016년 말까지 649건의 심사청구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건과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FTA 관련 결정문에 없는 관계로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관세청의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진 제도로 심판청구를 들 수 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세목별심판결정사례에서 1992년부터 2016년 말까지 3,094건의 결정문을 조사하였다.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후 과정인 행정소송에서의 결정문은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

구의 게시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상호간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논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정문 전수가 아닌 최근 4년에 해당하는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의 결정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샘플링에 있어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외한 적부심, 심사청구 결정문의 샘플이 워낙 미미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 적용이 가능한 샘플 양을 확보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실제 관찰된 소량의 샘플을 증폭하기 위해 통계적인 오차범위를 설정하여 복원 무작위추출을 무한에 가깝게 시행하는 것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식(Monte Carlo Simulation Method)의 일종이다. 즉, 주어진 Data Set을 원래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독립 표본으로 가정하고, 그 자료로부터의 중복을 허용한 무작위 재추출 자료를 작성하여 각각에서 얻은 통계량을 계산하고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계통수를 추정한다. 최근에 등장한 Google의 알파고가 부트스트랩 알고리즘을 사용한 대표적인 학습강화 머신으로 기존 훈련 샘플 데이터를 증폭하여 데이터 강화 기법을 실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원산지 검증 결정문 현황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2013년 이래로 2016년 말까지 게시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 중 서류 미비나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인한 각하 의견 및 과세 취소와 같은 인용 사례를 제외한, 즉 이후 관세청 및 감사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이어지는 기각 또는 부분 기각 사례에 대한 결정문은 총 74건으로 이는 본 연구에서 가설 설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의 최종 샘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핵심 정리 사항은 아래 <표 4>과 같다.

〈표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 핵심 사항

(단위 : 건, %)

핵심 사항		Bootstrap		Ratio
		Total	적부심 기각건	
결정 내용	기각	108	12	80.0
	인용	12	2	8.9
	각하	9	-	6.7
	일부 인용	6	1	4.4
관련 협정	한-EU	71	6	52.6
	한-미	38	4	28.1
	한-ASEAN	26	3	19.3
쟁점 사항	품목분류 적정 여부	75	2	55.6
	직접운송 여부	27	4	20.0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21	9	15.6
	신의 성실	12	-	8.9
검증 당사자	수입자	114	13	84.4
	수입자, 수출관세당국	21	2	15.6
기각 및 각하 사유 (총 117건)	품목분류오류	69	3	51.1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21	7	15.6
	수출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18	2	13.6
	수입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9	1	6.7
계		135	15	100.0

2) 심사청구

위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의 결과가 채택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된다.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정보의 미비 또는 부재로 인해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관세청 심사청구를 대상으로 그 연계성을 보고자 한다. 관세청 심사청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 이래로 총 649건의 결정문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결정문 중 오픈 API를 통해 접근 가능한 결정문은 총 11건에 불과하다. 이 또한 미소한 결정문 샘플로 인해 정량적 분석이 쉽지 않고 본 연구는 부트스트랩을 통해 샘플 증폭을 실시하였다. 적부심사와 마찬가지로 복원무작위추출 과정을 통해 오차 범위 5% 내 총 135건의 결정문 샘플을 생성하였다. 이때 적부심사기각 건 비율을 부트스트랩에 적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심사청구를 진행한 건(총 120건)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각된 후 이에 대한 이의 제기로 심사청구를 한 건(총 15건)을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핵심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관세청 심사청구 결정문 핵심 사항

(단위 : 건, %)

핵심 사항		Bootstrap		Ratio
		Total	적부심 기각건	
결정 내용	기각	108	12	80.0
	인용	12	2	8.9
	각하	9	-	6.7
	일부 인용	6	1	4.4
관련 협정	한-EU	71	6	52.6
	한-미	38	4	28.1
	한-ASEAN	26	3	19.3
쟁점 사항	품목분류 적정 여부	75	2	55.6
	직접운송 여부	27	4	20.0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21	9	15.6
	신의 성실	12	-	8.9
검증 당사자	수입자	114	13	84.4
	수입자, 수출관세당국	21	2	15.6
기각 및 각하 사유 (총 117건)	품목분류오류	69	3	51.1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21	7	15.6
	수출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18	2	13.6
	수입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9	1	6.7
계		135	15	100.0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를 통해 인용(또는 일부 인용 등) 된 사례가 있으며(전체 건수 대비 약 20.0%), 이를 통해 관세청 심사청구제도를 통한 구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3)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3년 이후 2016년 말까지 1,008건의 결정문이 게재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상 FTA 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핵심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진 결정문 133건을 추려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심판청구의 경우, 충분한 결정문으로 부트스트랩을 통한 샘플 증폭을 시행하지 않았고, Raw Data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단독으로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청구 건을 제외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각을 통해 재청구된 심판청구는 총 19건이다. 이에 대한 정리 사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문 핵심 사항

(단위 : 건, %)

핵심 사항	건수		비율	
	전체	적부심사기각		
결정 내용	기각	64	13	48.1
	인용	33	4	24.8
	일부 인용	19	2	14.3
	조건 인용 (재조사 등)	15	-	11.3
관련 협정	각하	2	-	1.5
	한-EU	63	8	47.4
	한-미	31	4	23.3
	한-ASEAN	26	5	19.5
쟁점 사항	기타	13	2	9.8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31	6	23.3
	품목분류 적정 여부	29	1	21.8
	인증수출자 여부	23	4	17.3
	원산지증명서 적정 여부	15	3	11.3
	직접운송 여부	10	4	7.5
	협정적용배제 여부	7	1	5.3
	간접검증 미회신	7	-	5.3
	간접검증 기간경과 회신적정 여부	7	-	5.3
	5년 서류보관 여부	3	-	2.3
재신청거부 적정 여부	1	-	0.8	
검증 당사자	수입자	74	13	55.6
	수입자, 수출관세당국	50	3	37.6
	수입자, 수출관세당국, 수출자	6	3	4.5
	수입자, 수출자	3	-	2.3
기각 및 각하 사유 (총 66건)	간접검증 회신지연	15	-	11.3
	인증수출자 확인소홀	13	4	9.8
	품목분류오류	11	3	8.3
	수입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7	2	5.3
	수출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6	1	4.5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6	2	4.5
	관세사 협정관세 신청서 누락	3	1	2.3
	사후 신청기간 경과	2	-	1.5
	수출자 화재	2	-	1.5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경과	1	-	0.8
계	133	19	100.0	

4) 재심사에 따른 구제 현황

마찬가지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19건의 사건 중 6건(31.6%)이 인용, 일부 인용 또는 조건 인용의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오히려 관세청 심사청구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재인용을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법제도를 통한 피해 구제 또는 경감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2013년 이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샘플 증폭에 따른 비례적 사례를 통해 15건이 심사청구를 통하여, 그리고 19건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부당 과세에 대한 재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청구한 사례의 약 12.2%가 인용, 일부 인용, 조건 인용 판정을 받아 청구인이 구제되었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각된 사례와 재청구 사례를 바탕으로 관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수입 지역에 따른 협정 유형 및 쟁점 사항, 검증 당사자 등에 따른 인용 가능성의 통계적 차이에 대하여 가설 설정 및 검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논문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 패키지로 SAS v.9.4를 사용하였다.

4. 가설 설정

1) 청구 Flow별 표본구성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각 사건을 청구년도, 수입물품이나 수출국 등을 통해 각 연계 사건 간 플로우를 바탕으로 아래 표를 구성하였다. 아래 <표 7>과 같이 부트스트랩을 통한 총 149건의 과세전적부심사 증폭 샘플이 모수가 되며, 심사청구로 흘러간 사건과 심판청구로 흘러간 사건이 각각 15건 (증폭 샘플), 19건 (실제 샘플)으로 총 34건의 재심 청구 결정문이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이 되었다.

〈표 7〉 적부심사-심사/심판 청구 Flow

(단위 : 건, %)

핵심 사항		건수				비율 (재심/적부)
		적부 심사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재심 청구	
계		149	15	19	34	22.8
결정 내용	기간	149	12	13	25	16.8
	일부인용	0	3	6	9	6.0
관련 협정	한-ASEAN	61	3	6	9	14.8
	한-미	31	4	5	9	29.0
	한-EU	57	6	8	14	24.6
쟁점 사항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44	9	6	15	34.1
	직접운송 여부	39	4	4	8	20.5
	원산지증명서 적정 여부	25	0	3	3	12.0
	인증수출자 여부	20	0	4	4	20.0
	협정적용배제 여부	12	0	1	1	8.3
	품목분류 적정 여부	9	2	1	3	33.3
검증 당사자	수입자	104	13	13	26	25.0
	수입/수출자, 수출관세당국	32	0	3	3	9.4
	수입자, 수출관세당국	13	2	3	5	38.5
기간 사유	인증수출자 확인소홀	36	0	4	4	11.1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32	7	2	9	28.1
	수입자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28	1	2	3	10.7
	품목분류오류	19	3	3	6	31.6
	수출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21	2	1	3	14.3
	협정적용 배제물품	13	0	1	1	7.7

위의 표에서 보면, 핵심 사항에 따라 기각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사례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해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는지, 또한 그 재심 청구의 결과가 어떤 요인에 의해 인용되는지 (또는 다시 기각되는지)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2) 가설 설정

이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기각 사례와 그 사례에서 청구년도, 수입물품이나 수출국 등을 통해 연계 사건 간 플로우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아래 가설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시행하였다. 첫째, 위의 재심청구 비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국 (또는 관련 협정)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 청구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타 관련 협정은 한-호주, 한-칠레, 한-인도, 한-캐나다, 한

-EFTA 등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샘플이 적어 이를 기타 협정으로 처리하였다. 표에서 보기에, 한-미, 한-EU에 대한 수입의 경우 재심청구 비율이 한-ASEAN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심청구나 구제제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경우보다 서구 유럽, 특히 미주의 경우 그 청구 건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영훈, 2013).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거래에 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각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재심청구의 이유에 해당하는 쟁점사항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원산지증명서 적정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협정적용배제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 등 대략 6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쟁점사항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즉 어떠한 쟁점 사항에서는 더 많은 재심청구가 일어나고 어떤 쟁점은 재심청구가 덜 일어나는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또한 선행 연구에서 특히관련 쟁점사항별 재심청구율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하홍준, 2012), 본 연구는 아래 두 번째 가설을 수립하였다.

H2: 과세전적부심사 기각 건의 심사청구/심판청구의 쟁점 사항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위의 표에서 보면 검증당사자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수입자만 검증대상인 경우와 수입자, 수출관세당국(간접검증), 수출자(생산자)(수입국 직접검증) 모두 검증을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수출자를 제외한 수입자와 수출관세당국(간접검증)이 검증을 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아래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과세전적부심사 기각 건의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검증대상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재심청구가 다시 기각되는지에 대한 요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재심청구의 기각 요인은 인증수출자 확인소홀,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수입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품목분류오류, 수출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협정적용 배제물품

등으로 대략 6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요인에 따라 기각률이 달라지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4: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 요인에 따라 기각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위의 가설은 t-test 및 ANOVA,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류의 ANCOVA 분석을 통해 비율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여 가설을 기각 또는 채택하게 된다. 다만 표본을 2개 이하로 구성할 수 있는 분석의 경우, t-test를 이용하며, 3개 이상의 요인이 있는 경우는 ANOVA, ANCOVA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분석을 위한 표본, 즉 분석의 단위가 각 하나의 사건(또는 결정문)이므로 표본수가 많이 적어 동질성 검증 및 표본에 대한 F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비율 차이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5. 분석 결과

1) 가설 1 (H1)의 검증(이표본 t-test)

가설 1의 경우, 서구와의 국제거래와 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거래를 비교하되,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 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정이므로 조세불복제도 관련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홍정화, 조재천, 김선구, 2007) 본 연구 또한 이표본 one-tailed t-test를 실시하여 <표 8>과 같이 가설을 검증하도록 한다.

<표 8> H1 검증을 위한 one-tailed t-test

	자유도 (DF)	제곱합 (SS)	평균제곱 (MS)	F값	P값
Model	2	94,8431	94,8431	226,15	<.0001
Error	147	158431,0821	0,4194		
Total	149	158525,9251			
		분산(Var.)	자유도(DF)	t값	P값
Pooled		Equal	146	15,04	<.0001
Satterthwaite		Unequal	142	15,04	<.0001

분석 결과, 등분산성 가설을 채택 (F=23.12)하여 Pooled Method를 적용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F=226.15)도 우수하다. 또한, 95% 신뢰도를 바탕으로 (오차범위 5%) p값이 유의

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H1을 인용한다. 즉,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거래에 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각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하는 청구자와 아시아 권역에서 수입하는 청구자의 무역 실무에 대한 지식 차이를 검증할 수는 없으나 아시아 권역에 비해 유럽-미주 권역에서 수입하는 청구자가 법제도에 대한 활용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설 2 (H2)의 검정(공분산분석)

두 번째 가설의 경우,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Jung, Lee, Choi, 2008), 공분산분석(ANCOVA)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9>과 같다.

<표 9> H2 검증을 위한 ANCOVA test

변수 (Parameter)	자유도 (DF)	추정값 (Estimate)	표준오차 (S.E.)	Wald χ^2	P값
Intercept	1	-2.0960	0.1171	320.3193	<.0001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1	0.1456	0.00560	677.0770	<.0001
직접운송 여부	1	0.1011	0.00684	218.0739	<.0001
원산지증명서적정 여부	1	-0.0363	0.0246	2.1868	0.1392
인증수출자 여부	1	0.2193	0.0132	274.4722	<.0001
협정적용배제 여부	1	-0.00999	0.0247	0.1639	0.6856
품목분류 적정 여부	1	0.0140	0.00108	169.2856	<.0001

먼저 F검증 결과에 따라(F=21.27) 모델 적합성은 확보 되었으며, 위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재심 청구의 사유적인 핵심 쟁점 사항 중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는 유의하되, 원산지증명서 적정 여부와 협정적용배제 여부는 그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앞의 네 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하여 재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석을 토대로 보아 청구인은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로 인한 과세의 부당 반환청구는 나름 법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 청구에 대한 소요가 통계적인 수치로 비추어 보아 그리 많지 않다고 짐작할 수 있다.

3) 가설 3 (H3)의 검정(분산분석)

세 번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조재천, 홍정화, 김원희, 김선구, 2008),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10>와 같다.

<표 10> H3 검증을 위한 ANOVA test

	분산분석 제곱합 (SS)	평균제곱 (MS)	F값	P값
수입자	21.482700	21.482700	1.27	0.1201
수입/수출자, 수출관세당국	70.312500	70.312500	3.07	0.0917
수입자, 수출관세당국	43.900500	43.900500	2.71	0.1024

ANOVA test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일단 모델 적합도는 유의하나($F=9.02$), 세 개 그룹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5% 오차율을 적용하여 P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므로 이를 기각한다. 즉, 과세전적부심사 기각 건의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검증대상자에 따라 재심 청구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본 모델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자 단독으로 검증을 실시하며, 수출자를 검증하거나, 수출관세당국이 개입하여 검증하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적어 비록 모델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그 유의성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자 단독으로 검증을 하나 수출자나 수출자 측 관세 당국이 참여하여 검증을 하나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설 4 (H4)의 검정(공분산분석)

마지막으로 H4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Jung et al., 2008),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1>와 같다.

〈표 11〉 H3 검증을 위한 ANOVA test

변수 (Parameter)	추정값 (Estimate)	표준오차 (S.E.)	Wald χ^2	P값
Intercept	35.0322	0.2290	23398.316	<.0001
인증수출자 확인소홀	16.0524	56.0227	0.0821	0.7745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0.4309	0.0148	852.6193	<.0001
수입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0.00680	0.0175	0.1510	0.6975
품목분류오류	0.00412	0.0034	148.4490	<.0001
수출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5.5062	281.1	0.0004	0.9844
협정적용 배제물품	5.8311	963.1	0.1712	0.9952

분석 결과 모델 적합성은 확보가 되었고 (F=3.66), 기각 사유에 따라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나머지 기각 요인인 인증수출자 확인소홀, 수입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수출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협정적용 배제물품에 대해서는 그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앞서 두 가지 요인의 경우는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요인의 경우는 인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높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청구인이 인증수출자 확인소홀, 수입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수출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협정적용 배제물품의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그러한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과의 해석

본 연구는 관세청 및 조세심판원에서 나오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첫째, H1을 인용하여 서구와의 국제거래와 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거래를 비교하되,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둘째, 핵심 쟁점 요인과 재심사 요구와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H2를 부분 인용하였으며,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는 유의하되, 원산지증명서 적정 여부와 협정적용배제 여부는 그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세 가지 검증 그룹(수입자 단독, 수출/수입자 및 수출관세당국, 수입자 및 수출관세당국)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기각되었으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기각 건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검증대상자가 수입자만이 검증대상이거나 또는 수출자나 수출자 측 관세 당국 그 어떤 그룹에 검증을 하여도 그 결과에 대하여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H4를 부분 인용함으로써, 기각 사유에 따라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기각 요인인 인증수출자 확인소홀, 수입자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수출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협정 적용 배제물품에 대해서는 그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져 오히려 인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IV. 결론 및 시사점

앞서 본 연구는 네 가지 가설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관세청 및 조세심판원에서 나오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와 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거래를 비교하되,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 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하는 청구자와 아시아 권역에서 수입하는 청구자의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검증할 수는 없으나 아시아 권역에 비해 유럽-미주 권역에서 수입하는 청구자가 법제도에 대한 활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두 번째로 핵심 쟁점 요인과 재심사 요구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는 유의하되, 원산지증명서 적정 여부와 협정적용배제 여부는 그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앞의 4가지 요인으로 인한 과세의 부당 반환청구는 나름 법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두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재심 청구에 대한 수요가 통계적인 수치로 비추어 보아 그리 많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설의 검증을 통해 세 가지 검증 그룹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기각되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기각 건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검증대상자가 수입자 단독이거나, 수출자나 수출자 측 관세당국 중 그 어떤 그룹이 참여하여 검증을 하여도 그 결과에 대하여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각 사유에 따라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나머지 기각 요인인 인증수출자 확인소홀, 수입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수출자 원산지 확인서류 미비, 협정적용 배제물품에 대해서는 그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진다. 이는 곧 앞서 두 가지 요인의 경우는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요인들 또한 인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높다.

본 연구는 제한된 결정문 자료를 부트스트랩 기법을 통해 통계적인 가설 및 검정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문적 성과가 있으나, 향후 FTA 국가와의 원산지검증에 관한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더욱 정교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대 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발효 이후 원산지검증에 관한 결정문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가장 아쉬운 상황이며, 이는 향후 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창봉·박원수(2015), “원산지검증의 인적역량과 원산지검증의 성과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0권 제2호, pp.27-49.
- 김창봉·현화정(2016), “원산지 이미지에 따라 원산지 요인들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1권 제4호, pp.131-155.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2008),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흥규(2014),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2호, pp.47-72.
- 이지수(2015), “원산지사후검증이 FTA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pp.91-115.
- 임다희·김은미(2016),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분쟁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pp.101-118.
- 정재완(2015),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pp.3-23.
- 조재천·홍정화·김완희·김선구(2008), “이용 만족도 분석을 통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9권 제2호, pp.154-177.
- 최영훈(2013), “한미FTA 원산지 검증, 미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와 원산지 판정 사례,” 「관세무역정보」 제13권 제2호, pp.32-49.
- 하홍준(2012), “심사품질 평가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표준모델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제32권 제1호, pp.175-197.
- 홍정화·조재천·김선구(2007), “현행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조세전문가집단의 만족도 분석,”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황남재·정재완(2015), “원산지검증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기업의 내부요인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pp.49-70.
- Jung, M. S., Lee, K. H., and Choi, M. K.(2008),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inancial Indicators of Hospitals in Korea: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18 No.2, pp.84-101.
- 관세청 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www.customs.go.kr>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ppeal Flow of Origin Verification for Korean Import Goods Using Bootstrapping Technique

Jong-Hyuk Kim
Sang-Hyun Heo
Suk-Chul Kim

Abstract

Under the FTA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s between FTA members will result in tariff reductions. In order to ensure the stable use of the FTA tariff system, it is necessary for the customs authorities to determine whether the origin goods are clearly applicabl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dure of appeal according to the origin ver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decision made by Korea Customs Service and Tax Tribunal. From this, we examined whether the rate of re-claiming a case rejected in the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differs. In addition, we carried out a quantitative analysis using bootstrapping technique in order to overcome the scarcity cases of verification of origin among FTA members.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tested the hypothesis that the re-claiming rate of Western countries is higher. Second, some issues represented higher re-claiming rate.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erification group and the re-claiming rate. Finally, even if an applicant makes a claim again, there is a possibility of being rejected again.

(Key Words) Bootstrap, Origin Verification, FTA, Examination of Propriety before Taxation, Appeal of Review